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보건소(건강증진과)

제정 2004 · 11 · 24 조례 제 512호 개정 2007 · 1 · 4 조례 제 650호 개정 2008 · 7 · 25 조례 제 725호 개정 2010 · 8 · 13 조례 제 857호 일부개정 2020 · 2 · 28 조례 제1575호 (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 일부개정 2022 · 11 · 11 조례 제1873호 일부개정 2023 · 12 · 22 조례 제203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2·11·11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출산축하금"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,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.
- 2. "신청인"이란 출생아와 함께 이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(부 또는 모,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 는 사람)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22·11·11]

제3조 삭제〈2022·11·11〉

- 제4조(지급기준) ① 이천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,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급한다.
 - ②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 - 1. 첫째아 100만원
 - 2. 둘째아 200만원
 - 3. 셋째아 300만원
 - 4. 넷째아 이상 500만원

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
-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른다.
- ④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.
- ⑤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.

[전문개정 2022·11·11]

- **제5조(지급대상)** ① 축하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22·11·11, 2023·12·22〉
 - 1.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
 - 2.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한 자인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
 - 3.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출산하기 전에 이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,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신청인이 출생아의 출생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아가 이천시에 출생신고 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〈신설 2022·11·11〉
 - 1.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.
 - 가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
 - 나. 직장,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
 - 2.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[전문개정 2010·8·13]

[제목개정 2022·11·11]

제6조(지급신청) 신청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

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 • 면 •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·8·13]

[제목개정 2022·11·11]

제7조(지급절차) 출산축하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환수조치) 이천시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축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·11·11〉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7·1·4 조례 제650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8·7·25 조례 제725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0·8·13 조례 제85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0·2·28 조례 제1575호,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2·11·11 조례 제1873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.

부칙〈2023·12·22 조례 제2032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.